

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 제388호(號) 1928(昭和 3)년 4월 18일 수요일

○ 고 시(告示)

조선총독부고시(朝鮮總督府告示) 제151호(號)

조선총독부철도(朝鮮總督府鐵道), 사설철도(私設鐵道) 및 항로(航路) 간(間) 여객 및 수·소화물 연대운송규칙(旅客及手小貨物連帶運送規則)을 1928(昭和 3)년 5월 1일부터 아래[左]와 같이 정(正)함.

1928(昭和 3)년 4월 18일 조선총독(朝鮮總督) 야마나시 한조(山梨半造)

조선총독부철도(朝鮮總督府鐵道), 사설철도(私設鐵道) 및 항로(航路) 간(間) 여객 및 수·소화물 연대운송규칙(旅客及手小貨物連帶運送規則)

제1장(章) 총 칙(總則)

제1조(條) 조선총독부철도(朝鮮總督府鐵道)와 사설철도(私設鐵道) 또는 항로(航路)와 여객(旅客), 수화물(手貨物), 소화물(小貨物) 혹은 여객부수소화물(旅客附隨小荷物)의 연대운송(連帶運送)을 한 경우에는 본(本) 규칙(規則)에 의(依)함.

전항(前項)에 의한 연대운송(連帶運送)의 범위(範圍)는 별도(別途)로 이것을 정(定)함.

제2조(條) 연대운송(連帶運送)에 관계된 화물(貨物)에 관한 손해(損害)에 대하여는 관계운수기관(關係運輸機關)은 연대(連帶)하여 배상(賠償)의 책임(責任)을 지지 아니함.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최고액(最高額)은 손해(損害)의 원인(原因)을 야기(惹起)한 장소(場所)가 속(屬)한 철도 또는 항로가 정(定)한 것에 의(依)함. 단 손해의 원인을 야기한 장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액(額)의 큰 것에 의(依)함.

제3조(條) 각(各) 운수기관(運輸機關)에 있어서 운송(運送)에 관한 제규칙(諸規則)은 본(本) 규칙(規則)에 저촉(抵觸)하지 아니한 한 연대운송(連帶運送)에 대하여 각(各) 그 소관(所管) 내(內)의 운송(運送)에 관하여 효력을 가짐.

제4조(條) 운임(運賃) 및 요금(料金)의 수입(收入) 및 환급(還給)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발생(發生)한 1전(錢) 미만(未滿)의 단수(端數)는 소관(所管)을 달리하는 각(各) 철도(鐵道) 및 항로(航路)마다 그 정(定)한 것에 의하여 이것을 절사(切捨)함. 단(但) 아래[左]의 각(各) 호(號)의 1에 해당(該當)하는 경우는 이 한(限)에 부재(不在)함.

1 대마일운임률[對哩運賃率]에 의하여 여객운임(旅客運賃)을 산출(算出)하는 경우

2 소화물급(小荷物扱) 신문지(新聞紙), 잡지(雜誌)의 운임을 산출하는 경우

소관(所管)을 달리하는 각(各) 철도(鐵道) 및 항로(航路) 운임(運賃)의 병산액(併算額) 또는 각(各) 철도의 영업(營業) 마일 수[哩數·mileage]를 통산(通算)하여 산출(算出)한 운임으로부터 할인(割引)을 하는 경우 및 소아운임(小兒運賃)을 산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1전(錢)

미만(未滿)의 단수(端數)는 그 산출액에서 이것을 절사(切捨)함.

제5조(條) 운임(運賃) 및 요금(料金)을 산출(算出)하는 경우에서 각(各) 철도(鐵道) 및 항로(航路) 영업(營業) 마일 수[哩數·mileage]에 1마일[哩·mile] 미만(未滿)의 단수(端數)가 발생(發生)한 때는 소관(所觀)을 달리하는 각(各) 철도(鐵道) 및 항로(航路)마다 그 정(定)한 것에 의하되 이것을 1마일[哩·mile]로 절상(切上)함.

## 제2장(章) 여객운송(旅客運送)

제6조(條) 승차권(乘車券: 승차·선권[승차선권(乘車船卷)])을 포함함. 이하 동일(同)은 편도승차권(片道乘車券), 왕복승차권(往復乘車券) 및 단체승차권(團體乘車券)의 3종(種)으로 함.

제7조(條) 승차권(乘車券)의 통용기간(通用期間)은 별단(別段)에서 정(定)함이 유(有)한 경우를 제(除)한 외에 철도(鐵道) 및 항로(航路) 영업(營業) 마일 수[哩數·mileage]을 통산(通算)하여 조선국유철도 여객 및 하물 운송규칙[朝鮮國有鐵道旅客及荷物運送規則] 제5조(條)의 규정(規定)에 의하여 이것을 산정(算定)함.

제8조(條) 여객(旅客)의 도중(途中) 하차(下車)에 대하여는 조선국유철도 여객 및 하물 운송규칙[朝鮮國有鐵道旅客及荷物運送規則] 제8조(條)의 규정(規定)에 의(依)함.

제9조(條) 여객운임(旅客運賃)은 각(各) 철도(鐵道), 항로(航路)에서 정(定)한 액(額)을 병산(併算)한 것으로 함.

제10조(條) 소아(小兒)란 12세[年] 미만(未滿)의 자(者)를 말함.

소아에 대하여는 운임은 할인(割引)의 유무(有無)에 불구(不拘)하고 대인운임(大人運賃)의 반액(半額)으로 하고, 4세[年] 미만의 소아는 무임(無賃)으로 함.

제11조(條) 여객운임(旅客運賃)의 할인(割引)을 하는 경우에서 각(各) 철도(鐵道) 및 항로(航路)가 그 할인율(割引率)을 같이 한 때는 각(各) 철도 및 항로에 있어서 보통운임(普通運賃)의 병산액(併算額)에서 할인을 하고, 할인율을 달리한 때는 각(各) 철도 및 항로마다 할인을 함.

제12조(條) 조선국유철도 여객 및 하물 운송규칙[朝鮮國有鐵道旅客及荷物運送規則] 제47조(條)부터 제53조(條)까지 및 제62조(條)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특별할인(特別割引)에 대하여는 각(各) 철도 및 항로에서 조선총독부철도(朝鮮總督府鐵道)와 동일(同一)한 취급(取扱)을 함. 단(但) 항로에 있어서 할인율(割引率)에 대하여는 별도(別途)로 정(定)한 것에 의(依)함.

제13조(條) 조선국유철도 여객 및 하물 운송규칙[朝鮮國有鐵道旅客及荷物運送規則] 제54조(條)부터 제61조(條)까지의 규정(規定)에 의한 특별할인(特別割引)에 대하여는 각(各) 철도에서 조선총독부철도(朝鮮總督府鐵道)와 동일(同一)한 취급(取扱)을 함.

전항(前項)의 경우에서 조선국유철도 여객 및 하물 운송규칙[朝鮮國有鐵道旅客及荷物運送規則] 제58조(條)의 규정(規定)에 의하여 수수(收受)함이 가(可)한 부족인원(不足人員)에

대한 여객운임(旅客運賃)은 조선총독부철도(朝鮮總督府鐵道)가 정(定)한 임률(賃率)에 의하여 이것을 산출(算出)함.

제14조(條) 공무(公務)로 여행(旅行)하는 육해군(陸海軍) 군인(軍人), 군속(軍屬) 및 경찰관리(警察官吏)와 죄수[囚徒] 및 감수관리(監守官吏)에 대하여는 하기[左記] 각(各) 호(號)에 의하여 운임(運賃)을 저감(低減)함.

1 철도(鐵道)에 있어서는 육해군(陸海軍) 군인(軍人), 군속(軍屬) 및 경찰관리(警察官吏)와 죄수[囚徒] 및 감수관리(監守官吏)에 대하여 5할(割)

2 항로(航路)에 있어서는 육해군(陸海軍) 군인(軍人) 및 군속(軍屬)에 대하여는 2할(割) 전항(前項)에 의하여 운임(運賃)의 할인(割引)을 받고자 하는 자(者)는 공무여행(公務旅行)인 것의 증명서(證明書)를 제출(提出)함이 가(可)함

제15조(條) 왕복여객(往復旅客)에 대한 운임(運賃)은 편도여객(片道旅客) 운임의 2배(倍)로 함.

제16조(條) 객차대절운송(客車貸切運送)의 경우에는 조선국유철도 여객 및 하물 운송규칙[朝鮮國有鐵道旅客及荷物運送規則] 제91조(條)부터 제93조(條)까지 및 제95조(條)부터 제99조(條)까지의 규정(規定)에 의(依)함.

전항(前項)의 경우에서 그 운송 마일 수[哩程·mileage]가 각(各) 철도(鐵道)를 통산(通算)하여 25마일[哩·mile]에 차지 아니한 때는 각(各) 철도의 운송 마일 수[哩程·mileage]에 의하여 25마일[哩·mile]을 안분(按分: 1마일 이하의 단수[端數]는 발선(發線)에서 절상[切上]함)하여 그 마일 수[哩程·mileage]에 대한 운임을 계산함.

제17조(條) 조선국유철도 여객 및 하물 운송규칙[朝鮮國有鐵道旅客及荷物運送規則] 제4조(條), 제6조(條), 제7조(條), 제9조(條), 제10조(條), 제13조(條), 제15조(條), 제17조(條), 제78조(條)부터 제86조(條)까지, 제101조(條)부터 제105조(條)까지, 제108조(條)부터 제115조(條)까지 및 119조(條)의 규정(規定)은 연대운송(連帶運送)의 경우에 이것을 준용(準用)함. 단(但) 동(同) 규칙(規則) 제80조(條)에 규정한 할인율(割引率) 및 동(同) 규칙(規則) 제83조(條)에 규정한 취급방법은 항로(航路)에 있어서는 그 정(定)한 것에 의(依)함.

제3장(章) 수하물(手荷物), 소하물(小荷物) 및 여객부수소하물(旅客附隨小荷物) 운송(運送)

제18조(條) 수하물운임(手荷物運賃), 소하물운임(小荷物運賃) 및 여객부수소하물운임(旅客附隨小荷物運賃)과 할증임금[增賃金]은 철도(鐵道) 상호간(相互間)에 있어서는 별단(別段)의 정(定)함이 유(有)한 경우를 제(除)한 외에 각(各) 철도(鐵道) 영업(營業) 마일 수[哩數·mileage]를 통산(通算)하되 조선총독부철도(朝鮮總督府鐵道)가 정(定)한 임률(賃率)에 의하여 이것을 산출(算出)하고, 철도(鐵道), 항로(航路) 상호간(相互間)에 있어서는 철도 및 항로에서 정(定)한 액(額)을 병산(併算)함.

제19조(條) 총포(銃砲), 양식(糧食), 피복(被服), 군용기구[陣具], 철괭이[工鍬], 병기(兵器), 천막(天幕) 등(等) 군수품(軍需品)을 공용(公用)하기 위하여 소하물(小荷物)로 운송한 경우

에 있어서 운임은 전조(前條)에 의한 운임에서 5할(割)을 저감(低減)함으로 함. 단(但) 항로(航路)의 운임(運賃)에 관하여는 이 한(限)에 부재(不在)함.

전항(前項)에 의하여 운임의 할인(割引)을 받고자 하는 자(者)는 공용(公用)인 것의 증명서(證明書)를 제출(提出)함이 가(可)함.

제20조(條) 소하물급(小荷物扱) 신문지(新聞紙) 및 잡지(雜誌)의 운임은 아래[左]아 같이 함.

2선(線) 연대(連帶)의 경우 1근(斤)당(當) 1전(錢) 최저운임(最低運賃) 3전(錢)

3선(線) 연대(連帶)의 경우 1근(斤)당(當) 1전(錢)5리(厘) 최저운임(最低運賃) 4전(錢)

제21조(條) 소하물(小荷物)에 대하여는 별단(別段)의 정(定)함이 유(有)한 것을 제(除)한 외(外)에 운임요금(運賃料)의 착불(著拂) 및 대금상환(代金相換)의 취급(取扱)을 하지 아니함.

제22조(條) 철도(鐵道)와 항로(航路)와의 연대운송(連帶運送)에 관계된 소하물에 대하여 하송인(荷送人)의 청구(請求)가 유(有)한 때는 철도(鐵道) 및 항로(航路)를 통하여 화물상환증(貨物相換證)을 발행(發行)함. 이 경우에는 선하증권(船荷證券)을 발행하지 아니함.

제23조(條) 조선국유철도 여객 및 하물 운송규칙[朝鮮國有鐵道旅客及荷物運送規則] 제144조(條)부터 151조(條)까지, 제153조(條)부터 제156조(條)까지, 제158조부터 제165조까지, 제170조(條)부터 제176조(條)까지, 제178조(條)부터 제193조(條)까지 및 제198조(條)부터 제209조까지의 규정(規定)은 연대운송(連帶運送)의 경우에 이것을 준용(準用)함.